

# **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대고객 안내사항**

(창구, 고객센터)

※ 고객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.

## **□ 지급정지 해제 시**

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해제 시, 신청한 계좌의 출금 및 출고거래 정지  
가 해제됩니다.

- 단, 일괄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기관에서 등록된 사고신고, 「통신사기  
피해환급법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, 금융감독원 「개인정보노출자  
사고예방시스템」에서 등록한 개인정보노출사실 등 여타 사고신고의 효력에는 영  
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- 여타 사고신고의 미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제대금 · 요금 · 대출원리금  
등의 미납, 연체료 발생 등 피해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  
지 않습니다.
- 또한,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본인의 지급정지 해제 신청에 의해 발생하  
는 출금거래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따라서, 금융사기 피해 발생 가능성성이 완전히 해소된 경우에 한하여 해제  
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